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 2. 18(목) 평창군수(안전건설과장)
- 회부일자 : 2016. 04. 14(목)
- 상정일자 : 2016. 04. 27(수) 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오정희)

- 본 조례안은 조례 입법의 합법성 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조례에서 다시 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을 “강원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